

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2020.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28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11. 13(금)
- 라. 회부일자 : 2020. 11. 17(화)

### 2. 제안이유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 3항에 따라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10,898천원

- 1).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 2).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3<sup>1)</sup>/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함.

---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나. 2021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1)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83,831백만원) × 1.3/10,000 =10,898천원

(※ 산출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부칙 제2조)

2)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해당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출연금	8,422	8,682	9,271	9,555	9,966	10,737	11,346	10,898	연구원 설립출연 2011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
- 2)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부칙 제2조
- 4)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 예산조치 : 10,898천원(2021년도 본예산 편성)

## 5. 검토의견

### 가. 제안이유와 관련 근거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2021년도 금천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 동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되는 법인으로 2011년 4월 설립되었음.

### 나. 2021년도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1만분의 1.3<sup>2)</sup>을 곱하여 산출함. 자치구의 보통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2개 세목이며 2019년도 우리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838억 31백만원임. 2021년도 금천구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838억 31백만원에 1만분의 1.3을 곱한 1,089만 8천원임.

산출내역 : 838억 3,100만원 × 1.3/10,000 = 1,089만 8천원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 출연금 출연 비율 변경(2020. 9. 8. 공포 및 2021. 1. 1. 시행예정)  
(현행)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 (21년) 1만분의 1.3 → (22년 이후) 1만분의 1.2

**[표1 - 2019년도 결산 보통세 현황]**

(단위 : 천원)

계	2019년도 결산 보통세		비 고
	현년도	과년도	
83,831,109	83,831,109	229,282	

**[표2 - 금천구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해당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출연 금	5,374	5,500	8,287	8,422	8,682	9,271	9,555	9,966	10,737	11,346	10,898
출연 비율	0.01%		0.015%								0.013%

**다. 동의안 검토결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 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련 법령 각 1부.

2. 2021년도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출연금 현황 1부.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5호, 2020. 8. 26., 타법개정]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1.]

부 칙 <대통령령 제30994호,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붙임2

## 2021년도 서울시 및 자치구 출연금 현황(단위 : 천원)

구 분	①'19년 결산 지방세	'19년결산보통세			'21년 출연금		
		②소계(㉑+㉒)	③현년도㉑	④과년도㉒	⑤'20년 정산액	⑥'21년출연분 (②*1.3/10000)	⑦'21년출연금 (⑦=⑥+⑤)
서울시 소계	20,921,194,477	20,322,315,099	20,126,797,132	195,517,967	2,419,349	2,641,904	5,061,253
서울시 본청	17,212,165,492	17,212,165,492	17,036,397,096	175,768,396	2,419,349	2,237,582	4,656,931
종로구	119,219,055	119,219,055	118,271,431	947,624		15,498	15,498
중구	166,311,045	166,311,045	165,616,438	694,607		21,620	21,620
용산구	126,612,239	126,612,239	125,940,740	671,499		16,460	16,460
성동구	105,734,880	105,734,880	105,378,559	356,321		13,746	13,746
광진구	90,912,101	90,912,101	90,495,290	416,811		11,819	11,819
동대문구	87,160,907	87,160,907	86,872,275	288,632		11,331	11,331
중랑구	77,144,309	77,144,309	76,567,046	577,263		10,029	10,029
성북구	408,127,362	89,067,838	88,486,307	581,531		11,579	11,579
강북구	70,439,616	70,439,616	69,959,274	480,342		9,157	9,157
도봉구	71,841,847	71,841,847	71,575,889	265,958		9,339	9,339
노원구	84,413,793	84,413,793	83,895,549	518,244		10,974	10,974
은평구	86,243,767	86,243,767	85,873,923	369,844		11,212	11,212
서대문구	85,537,031	85,537,031	85,014,591	522,440		11,120	11,120
마포구	123,830,180	123,830,180	123,301,696	528,484		16,098	16,098
양천구	101,707,903	101,707,903	101,188,939	518,964		13,222	13,222
강서구	133,983,158	133,983,158	133,472,685	510,473		17,418	17,418
구로구	93,951,588	93,951,588	93,352,199	599,389		12,214	12,214
<b>금천구</b>	<b>83,831,109</b>	<b>83,831,109</b>	<b>83,601,827</b>	<b>229,282</b>		<b>10,898</b>	<b>10,898</b>
영등포구	153,464,296	153,464,296	152,748,452	715,844		19,950	19,950
동작구	372,385,065	92,565,211	91,989,454	575,757		12,034	12,034
관악구	87,736,358	87,736,358	86,850,717	885,641		11,406	11,406
서초구	248,534,726	248,534,726	244,815,680	3,719,046		32,310	32,310
강남구	411,853,304	411,853,304	408,713,219	3,140,085		53,541	53,541
송파구	211,297,314	211,297,314	210,170,838	1,126,476		27,469	27,469
강동구	106,756,032	106,756,032	106,247,018	509,014		13,878	13,878